정책보고서 부문 (대학(원)생)

우수상: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자·VMS를 활용한 안전사회 구축 -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4학년
 고양고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4학년
 한주회

[요 약]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집단살인사건, 성폭력 사건, 노예사건 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참혹한 문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사례를 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정확한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학대·차별뿐 아니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부재 및 예방관리체계 미흡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정작 해결해야할 문제는 뒷전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을 조기발견·신속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침해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와 VMS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은 자원봉사자와 VMS를 활용하여 상시 자원봉사자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VMS에 등록하고 VMS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입증책임의 배분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수단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MS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 및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사례가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처하여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한계를 짓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범위를 넓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Ⅰ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 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가까운 나라 일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집단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집단살인을 한 사람은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사람으로 그는 "심한 장애인은 살아있어도 어쩔 수 없다. 안락사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계속 휠체어에 묶여 사는 것이 행복한가? 주위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말로장애인의 삶을 자기 생각을 얘기해왔지만 주변사람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말을 듣지않았다. 그리고 그는 종사자에게 살인을 할 계획을 암시하는 편지도 보냈고 이에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경찰이 경비강화라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은 발생하고 말았고 종사자들이 6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분 동안 일어난 난동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19명의 사상자를 만든 참혹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위의 사건은 멀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발생했듯 우리나라도 '멀지만 가까운 이 야기'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지속적 매해 증가하여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2011년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라 일명 '도가니사건'이라 불리며, 5년을 걸쳐 발생한 비인간적인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서울판 도가니사건, 남원판 도가니사건 등 예방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제 2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인권침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관, 요양시설, 학교 등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발생한 참혹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체계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나 여전히 이렇다 할 예방체계와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교육과 지식을 쌓으며 가치관과 성격을 형성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장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마저 장애 인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인권이무엇인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불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가해자들은 잘못된행동이란 점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잘못된 행동이란 점을 인지하지만 그 행동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대체로 장애인 인권침해 중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침해,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 편견, 선입견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침해현황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해서 분석·검토하여 나타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예방체계의 부재 ②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입증체계의 문제 ③ 민·관 협력체계 부재 ④ 미약한 처벌 ⑤ 인권교육의 부재로 위 5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 ㅇ 장애인 인권침해의 정의
-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사건, 대응책)

244 _ 기획재정부

- 외국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
- 장애인 인권침해의 문제점
- ㅇ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방안

나. 연구방법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인권침해 관련 연구자료
- 장애인 관련 법률
- ㅇ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 및 관련 연구자료
- ㅇ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선행과제 및 구축방법 관련 연구자료

Ⅱ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 주소

1. 인권침해의 정의

가. 인권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된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를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나. 인권침해

국어사전에 따르면 인권침해는 인권유린이라고도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1)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 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 12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다. 장애

장애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회의 장애에 대한 성숙도 및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거하여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한 가지 이상의 중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가진 자, 둘째, 완화된 손상 등의 기론을 가지고 있는 자, 셋째, 그런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 적 있는 자로 이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장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에선 장애유형을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뜻하는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뜻하는 '정신적 장애'로 장애의 종류와 기분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래 <표 1>와 <표 2>같이 총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각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¹⁾ 네이버 사전 '인권침해'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 및「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89호, 2016.5.4. 발령·시행) 제2조제1호

<표 1> 우리나라 장애 유형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장애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기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라.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타인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타, 감 금,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하고 욕설, 따돌림, 거부 등 정서적 학대를 하 거나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2. 우리나라의 현황

가. 도가니사건

1) 사건의 정의

2011년 9월 22일,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영화 <도가

³⁾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니>가 개봉했다. 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학대 및 집단 아동 성폭행, 그 외의 온갖 악행들을 통칭하는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의 이름을 따 '도가니 사건' 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은 영화 <도가니>로 영화화된 이후 '도가니 사건'이 공론화됨에 따라 전 국민적 분노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11년 9월 29일 재수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바꿔 경찰에서 전면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2010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인근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도 수차례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진상이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해당 교육청은 파악 책임을 행정당국에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2011년 10월 4일 결국 시설을 폐쇄하고 중징계한다고 판결이 되었다.4)

2) 사건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 법률 및 정책

2011년 9월 개봉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를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도가니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⁴⁾ 나무위키 '광주 인화학교 사건'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 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가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 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

1) 사건의 정의

2015년 4월 25일, 여고생 A(16)양은 송씨(지적장애인 3급)를 유인해 술을 마신 뒤 평택의 한 모텔로 송씨를 유인했다. 이후 A양의 친구 4명은 방으로 침입해 A양과 송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미성년자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송씨를 협박했다. 협박 과정 속에서 1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송씨가 돈이 없다며 신고하라하자 모텔에 34시간동안 감금하면서 담뱃불로 지지고 펄펄 끓는 물로 온몸과 사타구니등 성기부분에 부어 화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이 사건에 대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며 하이힐로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 모진 학대와 고문으로 실신을 하자 장기매매모의를 계획하고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장기매매 업자까지 찾아가려고하였다. 이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한 여고생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송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후유증까지 입었다. 그리고 뇌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다.5)

2) 사건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 법률 및 정책

2015년 11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여고생 김모 양(18)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9)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퇴생 최

⁵⁾ http://www.fnnews.com/news/201508202031403298

모양(18)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대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과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6)

다. 염전노예사건

1) 사건의 정의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와 감금 및 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 피해자 채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의면 신의도의 염전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김씨는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낯선 이의 꾐에 빠져 신의면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 애초의 말과는 달리 채씨와 김씨는 1년 6개월 동안, 염전에서 함께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일을 했다.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김씨는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 모두 실패했다. 탈출까지 실패한 김씨는 결국 서울에 있는 모친에게 '살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모친이 경찰에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피해자들을 구출한 이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건은 많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일체수색과 신안군 신의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대거 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최초 경찰을 통해 두 명의 장애인이 구출된 사건만을 지칭하여 '염전노예사건'이라 일컫기도 하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밝혀진 전남 해안 일대의 염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동력 착취의 관행을 통칭하여 '염전노예사건'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염전노예사건'이 공론화 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왔다."라고 하며 염전노예사건이 지역의 관행이었음을 인정하였다.7)

⁶⁾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3100123644029

⁷⁾ 염전노예사건의 반인권성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과제에 관한 연구

2) 사건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 법률 및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4일 업무 보고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남해안 섬 지역 근로자 대상 인권유린실태를 점 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남경찰은 7개 섬 지역에 상주하여 활동하는 인권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또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권유린행위가 드러나면 1회 6개월 영업정 지 2회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안군은 '염 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해 일정 기간 생산자 교육 등 홍보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 다. 또한 최근에는 2020년 신안군에 경찰서를 신설함으로써 치안강화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일어난 후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표 4>와 같다.

<표 3>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이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옹 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① 국가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제26조(장애인 인권침해 모니터링)** ①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제27조(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 및 조사) ①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 범경찰관리는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 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 제28조(응급조치)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를 발견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범경찰관리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 장애인이 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2조(장애인쉼터 등의 설치) ①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사도 및 사군구에 1개소 이상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9조(피해 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장애인의 신청 또는 직 권으로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희망하거나 자립이 필요한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남원 장애인 폭행사건

1) 사건의 정의

2016년 5월 16일 전라북도 남원시 평화의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11년 9월부터 생활지도 명분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창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밥을 먹지 않는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상습 폭행하였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해당시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영상으로 장애인 폭행에 대해 적나라게 드러나면서 남원 도가니 사건이라고도 한다.8)

2) 사건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 법률 및 정책

이에 5월 25일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평화의집 사태에 대한 사과와 평화의집 시설 즉각 폐쇄, 평화의집 거주인에 관한 긴급대책 마련,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수립, 평화의집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5

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9/0200000000AKR20160519083600055.HTML

월 30일 한기장사회복지재단은 평화의집 전국대책위가 제시한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⁹⁾

이후 전라북도에서 근절책으로 종사자 대상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권실태조사, 관련 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내부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제 도입, 폐쇄회로 CCTV 설치확대, 인권침해 발생기관 수사의뢰·시설폐쇄 등을 제시하였다.

3. 해외의 현황

가. 일본 장애인시설 집단살인

1) 사건의 정의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26일 새벽 전직 종사자였던 우에마츠라는 26세 청년에 의해 45명의 장애인들이 흉기에 찔려 그 중 1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우에마츠는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입원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종사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50분이나 난동을 부리고 살인극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다. 또한 종사자에게 살인을 할 계획을 암시하는 편지도 보냈고 경찰에서는 이로 인해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되었으며 50분이나 산동을 받지하는 편지도 보냈고 경찰에서는 이로 인해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10)

나. 미국 경찰 장애인 폭행사건

1) 사건의 정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 남성이 약물중독 치료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장애인 남성이 일어나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으려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제지했다. 그때 장애인 남성이 욕설을 하며 경찰을 향해 손찌검하는 행동을 보이자 흥분을 한 경찰관이 서너 차례 힘껏 장애인의 머리를 구타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에 미국 경찰은 CCTV 장면이 보도되면서 경찰 수뇌부는 문제의 경찰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11)

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9/020000000AKR20160519083600055.HTML

¹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61703001&code=970203

¹¹⁾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08884

Ⅲ 문제점

1. 법률적 문제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재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실시 기반 조성 등을 명시하면서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예방과방지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 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12)

그러나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예방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효 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14년 12월,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장애인 인권

¹²⁾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학대 및 방지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으나, 2015년 6월, 사건발생 약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이 강화되었다.

<표 5>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예방보단 학대 장애인을 신속 발견·보호·치료 중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실질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사업은 예방 연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예방체계에 대해선 제외되고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만 명시되었으며, 실질적인 실행은 2017년으로 사건발생후 3년이 지나서야 실행이 됨에 따라 3년간 장애인 인권침해는 크나큰 구멍이 생겼다. 또한 앞으로 시행까지 약 2달이 남은 시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어디에도 찾을 수 가 없다.

더불어「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다. 가장 먼저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누구든 신고를 할 수 있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보호 및 노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신분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실질적 예방을 위한 내용은 없다. 넷째, 학대신고를 받아야만 현장조사를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방안에 대한 명시보단 사건 발생 후 서비스 제공을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역할및 수행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의 경우 잘못된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항목은 없는 상태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생활영역에 있어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던 법률들과 달리 차별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구제수단이 명시하면서 제도화하였다.13)

¹³⁾ 장애인차별법령발굴및정비방안(2007, 법제처, p19)

<표 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지가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제5조(차별판단)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 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은 타 법에 비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며 차별을 금지 하고 있다.

이 법률 또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동법 제1조(목적)에 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명시되어 있으나 그 어디에도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제방안 역시 차별 행위를 받은 장애인당사자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 다는 내용뿐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예방책조차 없는 상황과 차별을 받았 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제도 또한 없는 상황이다.

둘째, 위법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며 셋째, 차별에 대한 행위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넷째, 차별 이후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 재참여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강제적 의무가 없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 등 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 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여섯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적인 측면이 아닌 수혜적인 측면으로 서술되어있다. 예로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있어 ①항과 ②항 모두 '~권리를 가진다.'라 명시하고 있으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있어 그리고 차별 및 인권의 경우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가진다'가아닌 '있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2. 정책적 문제

앞서 예를 든 사례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공론화가 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 한 뒤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맥락의 유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당장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을 덮고 없애기 위해 정책과 법률을 수립하다보니 여전히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있다.

가. 뫼비우스 띠와 같은 사건들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은 발생 이후 아동·장애인 성폭력이 강화되고 법이 개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천안판, 제주판, 남원판 도가니 사건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설 내,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성폭력에만 초점을 맞춰 넘어감으로써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건들을 더욱 키우게 된 계기라 볼 수 있다.

또한 '신안 염전노예사건' 발생 이후 인권수사대, 고용지침, 염전지역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크게 변경된 사안은 없었으며, 작년 2015년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통해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예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뒤늦은 조치로 인해 2년이 지난 지금 19년간 불법 감금 및 학대를 하며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만득이 사건'이 드러났다.

나.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대책들

도가니 사건은 시설 내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주요한 문제였으

나, 성폭력에 주요 초점이 쏠리며 아동·장애인 성폭력이 강화되고 법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시설 내,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지 나갔으며, 그로 인해 제주판, 남원판 등 지역별 유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안염전노예사건' 이후 염전지역 실태조사, 최근 발생한 '만득이 사건'의 경우 청주지역 실태조사, 충청북도 전수조사 등 한정적이고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제시함에 따라 여전히 근본적 문제발생을 없애거나 예방 및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견

우리나라는 '신안염전노예사건', '광주인화학교사건' 등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늦장 대응, 그 사건에 대한 한정된 대응책만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및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 대응을 위한, 사건을 찾기 위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선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문제점

앞서 설명한 선례와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 부재이다. 둘째,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에 있어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를 통해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자하는 자 즉,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난 뒤,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의 경우, 앞서 말했듯 경제적, 환경적, 신체적 등으로 자기의사부터 시작하여 정보습득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장애인의 경우 개인이지만 상대의 경우 대게 기업 또는 단체로 혼자서는 절대적으로불리한 분쟁이 된다. 셋째,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법적 명시는 사건 발생이후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하나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은 별개로 진행되다보니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 결여, 행정편의주의적 조사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 실태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한 사법권의 힘이 부족하여

수박 겉핥기식이 진행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넷째, 미약한 처벌이다. 앞에 설명한 사건들의 실제 처벌은 미비하며, 과반수의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그 정도가미약하다. 이는 재발을 없애는 것이 아닌 다시 재발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섯째, 해당지역, 해당 유형, 해당 사건만을 점검하는 안일한 대응이다. 각 사건들의 대응책을 보면, 실태조사, 전수조사, 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지역, 특정유형에 대한 점검 및 개정으로 사건의 본질을 무시한 채 안일한 대응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교육 대상, 방법, 시기 등 불명확하여 법으로 명시하나 마나한 상황이다.

이처럼 6가지의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사사건은 계속 발견되고 재발 될 것이며, 더욱 심각하고 악질적인 사건이 발생 할 것이다.

7

해결방안

1. 예방체계

가. 자원봉사자 활용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장애인 인권 현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제보 중 절반 이상인 61.91%가 제 3자의 제보였고, 그 중 공공기관종사자와 함께 민간기관종사자의 제보율이 9.5~6%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보율과 다르게 인권침해 가해자 있어서 민간기관종사가가 26.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웃 및 지인, 공공기관종사자, 그 외 친척으로 나타났다.14)

인권센터의 발표처럼 민간기관종사자의 가해와 제보는 각각 높은 수치를 나타낸 만큼 그들의 가해를 줄이고, 제보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설 내 인권침해는 줄어들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제3자이며 시설 내·외에서 자발적 봉사를 통해 종사자와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친밀감 형성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

¹⁴⁾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0

권침해를 예방하고 발견해낼 수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 (1)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 ①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은 시설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이자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그들이 '봉사'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인권침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시설종사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 가해사건을 줄이고 자원 봉사자에게는 '봉사'와 '감시자'로서 장애인 인권을 지키고 그들을 돕는 민간장애인지원가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여, 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자원봉사자VMS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하기위한 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올바른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봉사를 통해 민간장애인지원가로서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육은 VM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봉사시간 인정이 되지 않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물리적인 부분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아 장애인을 이해함으로써 더불어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②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계획

<표 7>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계획

| 교육 운영 기간 | 매년 |
|----------|---|
| 교육 횟수 | 6개월에 1회 필수 이수(반복) |
| 대상자 | 자원봉사자 |
| 교육 방법 | 동영상 프로그램 활용 |
| 사전 교육 내용 | 교육 실시 목적 장애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친밀감 형성의 중요성 장애인 인권침해 교육 장애인의 개인적 문제 혹은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자원봉사 실시 현장 및 행동관찰 VMS에 특이사항 입력 예시 및 방법 |

<표 8>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실시계획

교육 목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현장조사실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습득함 으로서 효율적인 상황대처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방법 | 동영상 |
|--|---------|
| ○ VMS 홈페이지 | 주제별 동영상 |
| :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공고 | 제작 필요 |

| 회차 | 교육주제 | 세 부 내 용 | 비고 |
|----|-----------------------------------|--|----|
| 1회 | 교육 실시 목적 | 교육 실시 목적 교육 실현 가치관 전달 우리가 활동함으로서 얻는 기대효과 자원봉사자에게 사명감 부여 | |
| 2회 | 장애유형 및 유형별 특성 | 장애란 무엇인가 15가지 장애유형 종류와 원인 장애유형 별 특성 및 에티켓 | |
| 3회 | 친밀감 형성의 중요성 | 친밀감 형성의 중요성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 | |
| 4ই | 장애인 인권침해 교육 | 인권,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침해 종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3가지 | |
| 5회 | 장애인의 개인적 문제 혹은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시 행동 요령 | |
| 6회 | 자원 봉사 실시 현장 및 행동관찰 | 현장에 배치를 받아 현장 조사 시 현장에서의 관찰과 장애인의 행동을 관찰 교육 | |
| 7회 | VMS 특이사항 입력 예시 및 방법 | 자원봉사 후 VMS에 특이사항 정보 입력 예시 및 방법 | |

(2) VMS 활용

① VMS의 정의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써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 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동법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

주관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며 주체는 보건복 지부이다. 이에 대한 사업수행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 보건·의 약, 공공기관, 기업 등)가 실시하고 있다.

② VMS 활용방안

현 VMS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원봉사지역과 기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봉사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자원봉사활동 후에 봉사기관에서 봉사자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한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VMS를 통해 봉사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실시하고 난 후의 시스템방안이다. 가장 먼저, VMS에 자원봉사자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7회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사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진행한다면 VMS에 봉사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체계 도입 전 봉사시간은 유지되며, 변경된 체계 도입 후부터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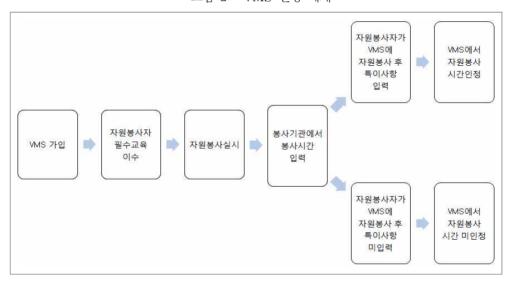
사전 교육 이후 자원봉사를 실시하며, 자원봉사 실시 후에는 VMS에 자원봉사간 특이사항 및 행동 등 관찰 및 확인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이 되지 않을 시 봉사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특이사항 및 행동 등 관찰과 확인한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봉사기관에서 입력한 자원봉사시간이 인정이 된다.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는 '시간 채우기'형의 자원봉사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시설 내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 및 조기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MS 변경 체계를 통해 시설종사자에게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도모할 수 있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기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될 것이다.

VMS자원봉사인증 시스템 가입 자원봉사실시 봉사시간 등록 WMS자원봉사인증시스 템 시간 확인 가능

<그림 1> VMS 현 체계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용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학대 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사·도에 지 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 업무로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이 있다.

-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용방안
- (1) 장애인학대예방 교육기관으로서의 활용

장애인권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식개선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은 명시되어 있어나, 제도 및 법률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대를 포괄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설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학대예방이 아닌 장애인 인 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기관으로서의 활용

VMS를 통해 조사를 인권침해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사건이 발생 시 사건에 대한 대책기관을 따로 마련하여 조사 및 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왔다.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설립된다면 VMS에서 일정 횟수 이상 침해사건이라 보이는 특이사항이 적히면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사건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입증책임의 배분

1) 입증책임의 배분 개정안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민사소통 체제하에서는 특별한 경우¹⁵⁾를 제외하고, 입증책임은 진정인(본문에선 장애인이 해당 됨)에게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신 체적·사회적·환경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기주장의 어려움, 경 제상황 및 교육 여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회적 약자라는 현실성을 본다면, 이들이 상대하는 상대방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고 조직적으로 대응함에 장애인들이 상대적 으로 입증 수단이 약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 은 '공평성'이라는 통설과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과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례를 보면 입증책임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평하다 볼 수 없다. 보다 공평한 입 증 책임 배분가 되기 위해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표 9> 입증책임의 배분 현안 및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
| 제47조(입중책임의배분) ①~② | 제47조(입중책임의배분) ① |
| 제47조(입중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제47조(입중책임) ① 이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위의 표처럼 개정된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자기의사, 소득, 교육 등 종합적 고려와 소송의 통상 소요기간을 고려했을 경우 장애인의 부담과 공평성을 갖 추게 될 것이다.

^{15) 「}제조물책임법」와 같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원인 사실과 그 원인과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제조물의 생산과 유통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공평의 차원에서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돌린 경우이다.

2. 제언

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

각종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후 지자체들은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에 있어 한정된 인원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은 매번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장애관련 민간단체의 경우 실태 및 전수조사에 있어 정보접근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의심사례가 있더라도 사법권한이 없기에 보다 정밀한 조사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학대 및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구제하고, 보다 효과적인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가 되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자체의 경우 인권과 예산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간단체의 경우 정보 접근 및 사법권한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여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실태 및 전수조사 가 민·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 될 수 있게 된다.

나. 처벌

작년 2015년 12월 18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활동보고회에서 "현재 학대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학대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장애를 이용해 수급자를 착취하고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학대 처벌 특례법이 필요하다."라 말했다. 이처럼 현재 관련 종사자들 및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관련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은 미약한 편이며, 앞의 사례뿐 아니라 '신안염전노예사건'의 경우도 지역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이에 김기선의원 등 11인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피해 주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10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¹⁶⁾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의 경우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주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례법 제정 또는 개

 $^{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D5Q1Z0D1K6L1O1X0H3N0Q0S6K3J4\&ageFrom=20\&ageTo=20$

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재발 및 근절에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이다.

다.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⑥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절을 위한 교육에 대한 시기, 대상, 방법의 세부적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일 뿐이며,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괴롭힘 등 방지교육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을 별개이며, 그 내용과 접근 역시 달리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상세한 교육대상, 내용, 방법을 명시하도록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분기별 등의 매년 2회 이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화된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3. 기대효과

위에서 제시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VMS에 자원봉사자가 인권침해사건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등록하여 이러한 사항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 이를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하여 조사하고 대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기관의 종사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다. 현재까지는 기관 내에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을 공공연한 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VMS에 등록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사건이 줄어들게 된다. 세 번째, 비용의 효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관은 설립되어 있거나 신설될 예정의 기관으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인력 또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함으로 인해 비용의 효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언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전문성

과 함께 사법권한을 통해 효과적인 실태조사 및 사건해결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처 벌강화를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무 조건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켜 장애인 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V 결 론

1. 한계점 및 결론

가. 연구의 한계점

위에서 제시한 VMS를 활용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체계 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가 쉽게 접근 확인이 가능하나 '만득이 사건' 처럼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쉽게 접근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에 서만 적용 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함께 동반된다면 사회복지 시설 외의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발맞춰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범위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넓어질 것 이다.17)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으로 실 시하고 있는 '복지허브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연구 가 VMS와 함께 병행된다면 장애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¹⁷⁾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2016년 8월 31일 기준)

나. 결론

위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침해대책은 숲이 아닌 나무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의 현장만을 조사하고 해결하고자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정작발생한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건이 재발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침해대책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보다 사건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사후대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에 있어서 진정자의 사회적약자임과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지 못해 공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며, 이렇다보니 피진정자(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제시하는 대책마저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을 세우고 늦장대응을 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에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난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VMS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장애인이 인권침해 받는 사례를 줄이며 장애인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한다. 또한 장애인인권옹호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VMS와 신설 예정인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활용함으로 도입 시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향후 장애인 인권침해문제만을 해결하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VMS,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자료>

- 김강원, "염전노예사건의 반인권성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5, pp. 1~11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 2015, pp. 4~34, 45~54
-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자원을 위한 실천적과제' 정책토론회", 2015, pp.3~48
-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2, pp. 7~57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2014, pp.3~22
-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분석 보고 및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2015, pp. 1~60